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번호 제865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7. 3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7. 14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3. 7.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 의결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세입세출결산 총괄
-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 예산이용 · 전용 · 이체사용
- 계속비 집행
- 예비비 집행
-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
- 채무 부담행위
-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기금 결산보고서
- 채권 현재액 보고서
- 채무 결산보고서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과 고성군결산 감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한바에 따라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고성군의회 의원을 대표위원으로한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04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으므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감사의견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 먼저 2003년도 세입결산으로 총 세입예산 현액은 3,508억 5,339만 2천원이었으며, 실제수납액은 3,545억 7,497만 1천임.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464억 1,598만 8천원이 수납되어졌고, 미수납 결손처분액은 1,996만 3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 8,346만 4천원 이었음.
- 특별회계는 81억 5,898만 3천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은 1억 4,243만 9천원이었음.
- 세출예산 현액은 총 3,508억 5,339만 2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28억 1,630만 6천원으로 1,710억 6,676만 8천원이 지출되고 1,585억 8,285만 8천원은 이월, 131억 6,668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0억 3,708만 6천원중 53억 3,862만 8천원이 지급되고 8억 3,736만 7천원은 이월되고 나머지 18억 6,109만 1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 결산은 회계연도 수입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예산에 의하여 선행위하고 재정보고로 의회의 사후 감독, 즉 승인을 받는 것으로서 예산집행의 적정여부와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감시를 한다는 입장에서 예산의 집행과정을 정확히 확인·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시켜야 될 것으로 보다 세심한 심의가 요구되며,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거 고성군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3명의 위원이 2004.5.19부터 6.7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검토하는 것으로서 결산서상에 나타난 순세계잉여금 발생과정, 지방세 체납액 증가사유, 이월사업 및 불용액 과다발생 원인, 변상금·과태료의 징수부진 이유, 시책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수지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검토 확인하고 증빙자료 대조 및 추진성과 등을 분석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가일층 분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6. 질의 및 답변 : 없음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2003. 7. 1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